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강형석
대한민국 3115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 26,
204호(불당동, M-타워)

발송일 (일/월/년) 2019년 01월 02일 (02.01.2019)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G-PCT-18-04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8106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7월 18일 (18.07.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27일 (27.09.2017)

국제특허분류(IPC)
C09J 9/02(2006.01)i, C09J 7/20(2018.01)i, C09J 177/00(2006.01)i, C09J 11/04(2006.01)i

출원인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씨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2월 28일 (28.12.2018)

심사관
이기철
전화번호 +82-42-481-3353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3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 KR 10-2015-0067060 A (주식회사 전영) 2015.06.17

D2 : JP 2006-169456 A (DAICEL-EVONIK LTD.) 2006.06.29

2.1. 신규성 및 진보성

2.1.1.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 고분자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전도성 금속 50 내지 500 중량부, 실록산-아믹산 화합물 0.01 내지 30 중량부를 포함하는 우수한 접착성, 전도성, 내열성 및 내습성을 나타내는 전도성 접착 필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인용문헌 D1의 단락 [0025], [0029]; 및 청구항 1, 5 참조).

청구항 제1항은 각 조성물의 함량(차이점 1) 및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폴리아미드 수지를 포함하는 점에서(차이점 2)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 1과 관련하여 각 조성물의 함량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점착제 조성물에 있어서 인용문헌 D1과 같은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2에 폴리아미드 수지를 포함하는 점착제에 있어서 폴리아미드 수지가 에틸렌디아민 또는 프로필렌디아민과 테레프탈산을 중축합하여 제조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폴리아미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인용문헌 D2의 단락 [0015], [0036]-[0040] 참조). 비록 청구항 제1항의 폴리아미드 수지와 인용문헌 D2의 폴리아미드 수지는 카르복실산 단위체의 종류와 반복단위 n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폴리아미드 중축합에 있어서 카르복실산 단위체의 종류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단위 n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의 범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도출하기에 자명하므로, PCT 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1.2. 청구항 제2항 및 제3항

청구항 제2항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전도성 금속으로 금, 은, 동, 철, 니켈, 구리, 주석 중에서 선택된 1종을 사용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인용문헌 D1의 단락 [0023] 참조).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3항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접착제 필름이 아믹산-실록산을 포함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인용문헌 D1의 청구항 1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2항 및 제3항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도출하기에 자명하므로, PCT 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2.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항 제1항-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